

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친환경농업정책과)

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김영준	064-710-3050
		팀 장 김성배	064-710-3021
		주무관 박정우	064-710-3026

I 추진개요

1. 사업목적

-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 및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
-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2. 추진방향

-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을 통한 소규모 농가 등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영농활동 도모
- 정부정책 ‘청년농 3만명 육성 계획’ 과 연계한 청년농업인 농가 경영지원 강화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II 세부 사업시행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비: 700,000천원(도비 700,000) * 정액지원
- 사업량: 3,500농가
- 사업시행주체: 농협제주본부 + 지역농협
 - 협조기관: 행정시(읍·면·동)
-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 최대 200천원 지원
- 신청기간: '25. 1. 8. ~ 1. 22.(15일간)

- 구입기간: 대상자선정 이후 ~ '25. 6. 30.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신청(지원)기간은 영농시기, 농자재 공급 가능 시기, 농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2.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으로써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 부득이한 사정(질병 등)으로 경영주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 **【붙임4 위임장 서식 첨부】 신청 가능**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1,000㎡이상(시설 330㎡)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 사료작물 등 제외) 재배하는 자는 지원 가능
-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 * 시설재배업은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 참고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1.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 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청년농업인) 1979. 1. 1. ~ 2006. 12. 31.
- (공통사항) 지방세 납세 채납액이 없는 자, 배우자 중 1명만 신청가능

3. 지원순위

-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 자조금 없는 품목 농가, 자조금 미가입 청년농·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순으로 지원
 - * 다품목 재배 농가인 경우 1개 품목 자조금 가입 확인서 제출
 - ** 동순위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의 합계가 적은 농가 우선 지원

4.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 지원한도(2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하여 추진

Ⅲ 사업추진체계

1. 표준 프로세스

단계	시기	주요 내용
1 사업 신청 (도 → 행정시(읍면동))	1~2월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25. 1. 8.~ 1. 22.)
↓		
2 대상자 선정 (행정시(읍면동) → 도)	2~3월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신청결과 제출
↓		
3 사업추진 (농협제주본부, 지역농협)	3~6월	· 지원 신청 접수, 구입확인 등 (지역농협) · 농가별 보조금 지급 (농협제주본부) · 사업 실적 보고 (농협제주본부)
↓		
4 사업완료 및 정산 (농협제주본부 → 도)	9~10월	· 정산 및 평가

2. 기관별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할분담
제주특별자치도	·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달 ·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사업계획 변경, 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
행정시 (읍·면·동)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서 제공, 농업경영체 정보 등 신청자격 확인(읍면동) · 사업신청결과 제출[행정시(읍·면·동)]
농협제주본부	·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시행 및 홍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완료 보고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실적 통보 · 보조사업 정산
지역농협	· 구입 확인, 농가별 완료 실적 보고 및 보조금 요청

IV

세부 추진요령

1. 사업 신청

- 농가의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읍·면·동에 신청서 비치
- 신청 농가는 사업 신청서 **【서식 1】**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구입 희망품목 및 희망농협* 기재
 - * 희망(구입)농협은 반드시 농·감협 본점 기준으로 작성
- 읍면동 담당자는 사업 신청 시 자격요건 확인란에 담당자 확인 협조

2.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신청인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결과 **【붙임 1】** 제출(읍면동→행정시): **‘25. 1. 31.한**
- 행정시는 신청 결과 수합 후 도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25. 2. 5.한**
- 농가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선정된 농·감협에서 농기자재 구입
 - 구입기간은 6월 30일까지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제주본부 간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신청 농가는 ‘25년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구입 확인서 **【서식 2】** (구매 영수증 첨부)를 지역 농·감협으로 제출: ‘25. 7월 말까지

3.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 신청(농협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25. 6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주특별자치도 → 농협제주본부): ‘25. 6월
- 농가별 사업 완료 보고 통보 및 보조금 요청(지역농협 → 농협제주본부)
 - 지역농협은 농기자재 구입내역 확인 후 보조금 일괄 요청 **【붙임 2】**
- 보조금 지급(농협제주본부 → 지역농감협): ‘25. 9월 한

4. 사업정산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실적 총괄【붙임 3】보고(농협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25. 9~10월
- 농자재 지원실적을 정산하고,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결과 보고(농협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5. 사후관리

- 농기자재 지원 및 지역 농협별 보조사업 적정 집행 점검(농협제주본부)
- 사업비 집행점검 확인 및 적정성 검토(제주특별자치도)

V 행정(협조) 사항

- (농업인) 사업 신청을 위해 신청서【서식 1】작성 및 담당 공무원 확인 후 '25. 6. 30.(구입기간) 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농기자재 구입과 관련된 일괄서류(구매 영수증, 구입 확인서)를 농·감협으로 제출
- [행정시(읍면동)] 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농가 홍보 및 사업신청 안내
 - 신청 자격요건 확인란에 담당 공무원 확인 협조
 - (읍면동) 신청서 원본 관리 및 사업신청 결과 행정시 제출: '25. 1. 31.한
 - (행정시) 사업신청 결과 수합 후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출: '25. 2. 5.한
- (지역농협) 농가별 사업 대상 통보 및 농기자재 구매 안내 등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청(지역농협 → 농협제주본부)
- (농협제주본부) 사업 신청 관련 지역농협 홍보 및 사업 추진
 -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농협제주본부): '25. 9월
 - 사업비 정산보고(제주특별자치도 → 농협제주본부): '25. 9 ~ 10월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구입 확인서

성명		연락처	
주소			

(단위: 원)

구입품목	공급 농협명	사업비		
		계	보조	자부담
계				

「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따른 상기 품목을 구입함

2025. . .

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4>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본 사업 신청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